
	규정	문서번호	TWP-A606	
		제정일자	2012. 10. 29.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일자	2014. 03. 24.	
		개정번호	1	페이지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단 운영

	<h1 style="margin: 0;">규정</h1>	문서번호	TWP-A606
		제정일자	2012. 10. 29.
	<h2 style="margin: 0;">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단 운영 규정</h2>	개정일자	2014. 03. 24.
		개정번호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단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College Cooperation)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형을 창출·확산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LINC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동원대학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단’이라 함은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동원대학교 산하기관(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업) 사업단은 산학협력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2. 산학협력단 역할 재정립 및 역량강화
3.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4. 현장실습
5. 캡스톤디자인
6. 그 밖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제2장 사업단 운영

제5조(조직구성) ① 사업단은 총장 직속으로 설치 운영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담당분야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지원센터 :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규정	문서번호	TWP-A606
		제정일자	2012. 10. 29.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일자	2014. 03. 24.
		개정번호	1

2. 창업교육센터 :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3. 가족회사지원센터 : 가족회사 및 산학협력협의회 활성화 기획 및 관리
4. 사업운영팀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관리

② 하부조직의 구성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이 대학 전임교원으로 교무위원급으로 보하며, 사업수행을 위해 대학내 각 조직과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총 사업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 2(사업부단장) ①사업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업부단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14.03.24.>

제7조(LINC사업 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LINC사업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LINC사업 운영위원회는 산·학·연·관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이 대학 소재지 산업계 인사가 50% 내외가 되도록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③ LINC사업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단의 사업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 예산 및 결산 심의
4. 기타 사업단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업단은 사업방향 설정, 시설기자재 도입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해 LINC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 하여야 한다.


⑤ LINC사업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LINC사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사업단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 위원(지방자치단체 포함 외부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③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당해 연도 사업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606	
		제정일자	2012. 10. 29.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일자	2014. 03. 24.	
		개정번호	1	페이지

④ 사업단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중앙관리) 사업단의 사업비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규정, 평가관리·사업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